부산광역시체육회 관리단체 운영 규정

# • 부산광역시체육회 관리단체 운영 규정

제정 2016년 6월 15일 개정 2017년 12월 21일

- 제1조(근거 및 목적) 이 규정은 부산시체육회(이하 "체육회"라 한다) 규약 제8조에 의하여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종목단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. <개정 2017.12.21.>
- 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에만 적용한다.
- 제3조(관리단체 지정의 통지) 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통지한다.
  - 1. 관리단체 지정사유
  - 2. 관리단체 지정일
  - 3.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
  - 4. 임원인준 취소
  - 5. 그 밖의 주요사항
- 제4조(관리단체 지정의 효력) ①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종목단체는 모든 권리 및 권한이 즉시 정지되며, 체육회가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.
  - ② 해당 회원종목단체 임원·선수 및 기타 관계자(이하 "회원종목단체 관계자"라 한다)는 회원종목단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해당 회원종목단체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, 체육회의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  - ③ 관리단체 지정사유의 소멸 등 회원종목단체가 정상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체육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종목단체에 관리단체 지정해제를 통지하고,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게 한다.
- 제5조(회원종목단체 관계자의 의무 등) ①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종목단체의 관계자는 체육회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체육회의 각종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 제공 등 체육회의 자문에 적극

협조하여야 한다.

- ② 회원종목단체 관계자는 체육회의 관리단체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조달· 사무 공간 제공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
- ③ 체육회는 체육회의 관리단체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회원종목단체 관계자를 즉시 징계처리 한다.
- ④ 회원종목단체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회원종목단체가 정상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6조(관리위원회의 설치) ① 체육회는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종목단체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9명 이하로 구성한다. <개정 2017.12.21.>
  - ③ 위원장, 부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.
  -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체육회 직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.

### 제7조(위원회의 기능) ① 위원회는 회원종목단체의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- 1. 대의원총회 기능에 관한 사항
- 2. 이사회 기능에 관한 사항
- 3. 법제·상벌 기능에 관한 사항
- 4. 사무국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<개정 2017.12.21.>
- 5. 회원종목단체 정관(또는 규약)에 규정된 사업 및 관련 제반사항
- ② 위원회는 해당 관리단체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단체의 대의원총회 및 임원선임에 대한 기간 등의 필요한 절차를 위원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.

### 제8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

- 1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한다.
- 2.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.

- 3.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- 4.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위원에게 소관업무를 분장하여 관장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종 소위원회(대회위원회, 심판위원회, 스포츠공정 위원회 등)를 둘 수 있으며, 각종 소위원회의 명칭과 소위원회 조직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.
- **제9조(준용)**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체육회 규약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한다.

## 부 칙(2016.06.15.)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 (2017.12.21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